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 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기준(PLS, Positive List System)이 강화되어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등록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장

1

공모 개요

가. 구 분 :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1 참조)

- 자몽 검은점무늬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83항목 (약효약해 I)
- 퀴노아 노균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81항목 (약효약해 II)
- 귀리 도열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83항목 (약효약해 III)
- 겨자채 배추좀나방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227항목 (작물잔류 I)
- 잔대(사삼) 점무늬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226항목 (작물잔류 II)
- 케일 배추좀나방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226항목 (작물잔류 III)
- 오크라 잿빛곰팡이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226항목 (작물잔류 IV)
-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진도 컨설팅 및 방제 매뉴얼·적정 살포물량 개발
-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현장 점검평가 및 긴급시험

다. 응모자격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대학,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농약 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25.(목) 18:00

- 공고문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사업공고 → 정부부처 '농촌진흥청'선택 → 검색

마. 평가기간

- 선정평가 : 2024. 1. 30.(화) ~ 2024. 2. 8.(목)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세부평가일정은 담당간사가 개별안내 예정

바. 응모방법

- 연구개발계획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 R&D 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부처명 '농촌진흥청' 설정 → 2024도 농약직권등
특사업 → '접수 클릭 후 내용 작성' → 제출

-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

IRIS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전문기관] 농촌진흥청 입력 후 검색 → [사업공고명] 옆 팝업창 (📄 클릭) → [기획과제] → [기획과제정보] 기획과제명 옆 돋보기(🔍 클릭) → 최하단 RFP파일 확인 또는 다운로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라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 개발기관이므로,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 ※ **2024. 1. 25.(목) 18: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모든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하고 **기관담당자 승인을 거쳐 “최종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종료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 (권고사항)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2~3일 이전에 사전 제출 바람

제출서류	대상자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 Part II 는 작성 첨부 - Part I, III 는 온라인 입력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주관책임자(응모자)	필수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대기업, 중소기업 등 영리기관	해당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정부 R&D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책임자(응모자)	해당시

-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 전체 파일 총용량 150MB 이하 권장




4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

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평가전 중복성 검토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담당 간사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1차 심사	온라인 평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선정평가위원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2차 심사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과제확정 및 공지		

다.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 (1)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주관/공동/위탁 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및 우리 청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3책)으로 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5공)로 봄

-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 응모불가

- (5) 협약 후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국외)연구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 (6) 공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한하여 재응모 불가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나. 응모된 서류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다. 과제 응모 시 응모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는 “③ 연구개발과제 응모서류 제출 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응모자가 직접 IRIS에 온라인 동의 또는 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는 협약시 온라인 동의)
-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항목에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 (응모책임자만 해당)
-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 사. 내·외부 사전협의 등 공모하여 신청 또는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 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자.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해 IRIS에서 다년차 협약을 실시하며, 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 주의사항

- 총연구비(총연구기간)는 예산상황에 따라 증액(증가) 또는 감액(감소)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과제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협약)을 포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문의처

- 공모과제 관련 : 각 과제별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063-238-XXXX)
- 응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8511)
- IRIS 시스템 관련 : IRIS 고객센터(☎1877-2041)

【붙임 1】 2024년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목록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기준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단위: 백만원)

이 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공모과제명	공 모 구 분	'24년 연구비			시 작 년 도	종 료 년 도	연구비 총액
				계	시험 연구비	출연금			
	농자재관 리 및 평가(R&D)	소계	외부 8 내부 1	13,910	250	13,660			13,910
1	(소면적작 물농약직 권등록)	[법정임무형] 자몽 검은점무늬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83항목 (약효약해 I)	외부	1,380	-	1,380	'24	'24	1,380
2		[법정임무형] 퀴노아 노균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 등록시험 81항목 (약효약해 II)	외부	1,347	-	1,347	'24	'24	1,347
3		[법정임무형] 귀리 도열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 등록시험 83항목 (약효약해 III)	외부	1,380	-	1,380	'24	'24	1,380
4		[법정임무형] 겨자채 배추좀나방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227항목 (작물잔류 I)	외부	2,270	-	2,270	'24	'24	2,270
5		[법정임무형] 잔대(사삼) 점무늬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226항목 (작물잔류 II)	외부	2,260	-	2,260	'24	'24	2,260
6		[법정임무형] 케일 배추좀나방 등 방제용 농약의 직권 등록시험 226항목 (작물잔류 III)	외부	2,260	-	2,260	'24	'24	2,260
7		[법정임무형] 오크라 잿빛곰팡이병 등 방제용 농약의 직 권등록시험 226항목 (작물잔류 IV)	외부	2,260	-	2,260	'24	'24	2,260
8		[법정임무형]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진도 컨설팅 및 방제 매뉴얼·적정 살포물량 개발	외부	503	-	503	'24	'24	503
9		[법정임무형]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현장 점검평가 및 긴급시험	내부	250	250	-	'24	'24	250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기준

【별지 제19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평가서(법정임무형)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계획 (25)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5	4	3	2	1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5	4	3	2	1
	최종/단계별/연차별 수행내용의 적절성 * 데이터관리계획이 있는 경우 항목별 기술 여부	5	4	3	2	1
	연구개발비 규모 및 배분의 적절성 * 연구장비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타당성	10	8	6	4	2
창의성 및 효율성 (25)	핵심기술 도출의 창의성	5	4	3	2	1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효율성 * 데이터관리계획이 있는 경우 설정목표의 달성 가능성	20	16	12	8	4
연구역량 (25)	참여기관의 적합성 및 수행능력	10	8	6	4	2
	연구책임자 역량 및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15	12	9	6	3
결과활용 (25)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15	12	9	6	3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10	8	6	4	2
합 계						

* 과제 목적·성격 등 특성에 따라 평가 주안점 및 배점 변경 가능(필요시)

예산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규모조정에 따른 전략 및 연구내용 조정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종합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input type="radio"/>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평가자 성명 (서명)

【별표 5】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기준 및 제재사유별 처분기준

I. 가·감점 기준

구 분	과제선정시 가·감점			적용기산일 (기준일)
	가점	감점	적용 기간	
<가점 항목> *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1.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이고,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2년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포상일
3.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4. 영리법인의 경우, 기술실시를 통한 정부납부기술료의 최근 2년간 누적 납부액(감면액 포함)이 200만원 이상인 연구성과소유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2년	납부일
5.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인증일
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 신기술인증 소관 법령 적용하여 조정 가능	3		2년	인증일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3년	제재처분일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점	3년	협약해약일 (또는 협약포기 시 협약예정일)

<비고 1>

가·감점 적용 기준

- * 가점1, 감점2 항목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 기한 내 1회
-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 기한 내 전체
- * 중복 시 부여 : 가·감점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